

# 근로자 지원제도

## 2. 출산

### 출산 전·후 휴가 및 급여

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 전·후 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#### 지원대상

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

#### 지원내용

구분	내용
휴가	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90일(출산 후 45일 확보)의 출산 전·후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*다동이는 120일(출산 후 60일 확보)부여
유산·사산 휴가	유산·사산한 근로자는 5~90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급여	최초 60일(다태아 75일)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(통상임금 100%)하며, 무급 30일은 정부가 지원(최대 월 160만원)

#### 지원방법

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.

- ① 출산 전·후 휴가 급여 신청서
- ② 출산 전·후 휴가 확인서 1부(최초 1회만 제출)
-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-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#### 지원문의
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국번없이 1350)
- 전국 고용센터([www.work.go.kr/jobcenter](http://www.work.go.kr/jobcenter))